한국체육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규정

일부개정 2020. 11. 23. 규정 제830호

1. 개정이유

○ 현재 진행 중인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따른 행정조직 보직명을 반영하고, 비전자 회의록 작성 방식 변경 및 운영세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대학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부서의 장 명칭 변경(안 제2조제1항)
- 회의 종료 시 위원장이 출석 위원 중 서명할 3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수 있도록 반영(안 제6조)
- 운영세칙 조항 신설(안 제7조)
- 그 밖에 자구 수정

3. **주요 토의과제**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: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붙 임: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9인"을 "9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교학과장, 기획과장, 훈련과장, 총무과장"을 "교무과장, 총무과장, 기획평가총괄팀장, 훈련학생총괄팀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1인"을 "1명"으로 한다.

제3조제5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6조 중 "별지의 회의록을 작성한다."를 "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 종료 시 위원장은 출석 위원 중 서명할 3명을 선정하여 서명하게 한다."으로 한다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제830호, 2020, 11, 23,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규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	제2조(구성) ①
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9인</u> 이내의 위	<u>9명</u>
원으로 구성한다.	
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	2
교학과장, 기획과장, 훈련과장, 총무과장	
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공무원	학생총괄팀장
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에 간사 <u>1인</u> 을 두되 사무국 규정	④ <u>1명</u>
담당공무원으로 한다.	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	제3조(기능)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기타</u>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	5. <u>그 밖에</u>
제6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	제6조(회의록)
별지의 회의록을 작성한다.	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 종료 시 위원장은 출석
	위원 중 서명할 3명을 선정하여 서명하게 한다.
<u> </u>	제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
	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
	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	부 칙(제830호, 2020. 11. 23.)
	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[별지 서식]	<u>〈삭 제〉</u>
회의 명 일 시 장 소	
한 건 명	
토의내용 요 지	
합의사항	
이건사항	
참석대상자 명 구 분 성 명 서 명	
참석현황 참 석 자 명 참 불 참 자 , 석	
발 선 사 명 자 서	
명 불참자	
작성자 소속: 직급: 성명: (인)	